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2. 25	5. / (총 34	<b>, □</b> H)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정 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신 현 두 류 재 현 민 유 정 임 한 숙	전 화	044-202-1890 044-202-1885 044-202-1888 044-202-1881
경찰청	과 장	최 종 상		02-3150-1605
사이버수사과	담 당 자	이 명 원		02-3150-0235
방송통신위원회	팀 장	김 영 주		02-2110-1560
인터넷윤리팀	담 당 자	김 혜 숙		02-2110-1511
법무부	과 장	김 재 술		02-2110-3610
교정본부 의료과	담 당 자	강 권 홍		02-2110-3617

# 코로LHI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평생친구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 확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특히 가호인력 부족을 호소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확보된 병상**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가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코로나19 치료시설에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화 △간호대 학생 활용방안 △간호사 구인 홍보 강화 등 가호인력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지난 19일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 된 데 이어, 최근 남아공에서는 더 많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발견 되었다고 하면서, '지구촌'이라고 할만큼 각국이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크다고 알려진 만큼 국내 유입 시 우리 방역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 방대본에게 각국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1 회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 12월 2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9.~12.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7,0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5.9명이다.
  -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25.): 1,025명
- 수도권 환자의 비중은 69.3%이며 비수도권 환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9.~12.2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97.1명	85.3명	40.4명	68명	66명	24.9명	24.1명
60대 이상	209.9명	33.3명	20명	20명	20.4명	7.4명	6.1명
<b>즉시 가용 중환자실</b> (12.24. 9시 기준)	40개	3개	4개	26개	9개	9개	10개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신속히 찾아 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제(12.24.)도 **118,07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는 의심환자로 신고된 57,14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147개\*)에서는 어제 59,77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그간 **총 411,604건**을 검사하여 1,025**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 서울 61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평생 친구

- □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
   센터 7,587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73병상, (준)중환자 병상
   329병상을 확충하였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101병상, 수도권 40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것이다.
  - \*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12.18.)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883병상을 확보**(12.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4.4%로 **1,5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총 137억 원을 지원하며, 400여 병상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의 59세 이하 무증상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상 운영 효율화도 노력 중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3개소 11,965병상을 확보**(12.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로 **6,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12.25.)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79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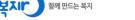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일 이상 대기자(명)	595	496	548	368	354	248	183	185	179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수도권 환자 통합분류**,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중수본 수도권 공동대응상활실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55명 으로 2배 늘리는(12.20.) 등 환자 대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중상은** 경미하나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별도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거나, 신장질환, 정신질환 등 특수한 의료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를 위해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개소를 조속히 지정** 하여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어제부터 거점 전담병원인 평택 방애병원에서 신장투석 환자 6명을 입원 치료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인력·장비를 갖춘 **거점 전담병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 장애인 환자의 경우,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을 내달 초순 부터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이 구비된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검토 하고 있다.







# 2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확대 및 12월 손실보상금 지급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시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①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②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하며, ③ 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손실 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5개 병원, 총 26억원)하는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보상 기준도개별 병원의 병상단가를 적용하고 있던 것을 '21.1월부터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상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 \*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 161,585원

















## < 병상단가 조정 사례 >

(단위: 원)

구분	기관명	ᄌᄖ	병싱	·단가	병상당
TE	기관병	종별	현재	조정	추가보상액
감염병	○○병원	종합	162,828	316,650	153,823
전담병원	○○병원	병원	114,489	161,585	47,096
중증환자	○○병원	상종	405,051	537,324	132,273
전담치료병상	○○병원	상종	712,273*	712,273	_

- \* 개별 병원의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이상인 경우. 해당 병상단가 그대로 적용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2.)에 따라 12월 24일(목) 총 1,39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해 '20년 손실보상 예산 뿐만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 워도 활용하였다.
  - \* '20년 총 집행액: 편성예산 9,014억 원(예비비 5,514, 추경 3,500) + 불용예산 385억 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 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9차)은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억 원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 하는 손실보상금이다.
  - \* (1~8차 누적 지급액) 343개소, 7,689억 원
  -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1.30.), ②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1.30.),
     ③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④ 선별진료소 운영(~8.31.),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8.31.),
     ⑤ 군로나19 환자 치료 기윤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⑥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평생친구

## < 대상기관별 9차 개산급 지급(안) >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	료기관			선별	
<b>구문</b>	종계	소계 <sup>*</sup>	김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진료소	
개소수	210	118	65	24	68	35	3	92	
지급액	1,269	1,146	715	415	797	519	6	124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sup>\*</sup>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 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 (보상항목) ① 소독비용, ②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 (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③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 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651개소), 약국(283개소), 일반영업장(3,641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 원이 지급된다.
  - \* (1~4차 누적 지급) 4,388개소, 313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641개소 중 2,458개소**(약 67.5%)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 대상기관별 5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이르기교	약국	일반영	병업장	사회복지
T E	[ 김계	의료기관	44	일반	간이	시설
개소수	4,581	651	283	1,183	2,458	6
지급액	12,821	10,137	368	1,957	286	73

***************************************											
				병원급	급이상				의원		
구분	계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651	58	12	33	7	3	3	593	502	50	41
지급액	10,137	3,542	907	2,330	142	33	130	6,595	5,745	613	237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 '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21년 예산(예비비)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 \* 예산 편성 및 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손실보상은 '21년 2월부터 가능하나. 1월 중 조기 편성될 경우 1월에도 손실보상 가능

#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 코도나 19 완자 지묘의묘기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평생친구

# 3 허위조작정보 대응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한상혁, 이하 '방통위')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해 보고받고이를 논의하였다.
- □ 경찰청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내·수사 착수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사전 차단,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개인 정보유출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에도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 행위가 늘어나는 조직을 보이고 있다.
-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 편성·운영하고, 복지부, 질병청, 방통위와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하여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대응해 왔다.
  - \* 총 27건 수사의뢰 받아 21건 33명 검거
- 모니터링 전담요원 및 사이버 범죄신고·상담 시스템 등 활용하여 온라인상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를 확인하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방통위·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
  - \* 총 669건 삭제·차단 요청(스자진삭제 73건, 스사이트 요청 412건, 스방통위 심의 184건)
-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웅** 하고 있다.













## < 내·수사 현황 >

구 분	합 계	검	거(건 /	'명)	내·수사 중
합 계	268	174	/	273	94
허위사실유포	212	130	/	204	82
개인정보유출	56	44	/	69	12

## 주요 검거사례

- ·(허위사실유포 스미싱) '자산 관리사 채널' 가입 페이지 및 사기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URL을 포함시킨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2) [경찰청]
- · (공공기관 사칭) '질병관리본부'라는 닉네임과 로고를 이용하여 우한 전세기 유증상자는 18명이 아니고 24명이라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한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인천]
- · (광복절 집회 관련 허위사실유포) 유튜브 등에 "8·15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1명 현장 즉사, 2명 병원 후송"이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피의자 검거 [서울]
- ·(출입자명부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에 임의로 체온 등의 허위 정보를 기입 후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DB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판매자 구속 [충남]
- □ **방통위**도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심의횟수를 주 2회(기존 주 1회)로 확대하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우선 처리하여 200건을 삭제·차단하였다.
  - 허위사실을 검증 없이 보도한 **뉴스 등 50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5건)**, 행정지도인 **권고(38건)·의견제시(7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이와 함께 주요 방송사에게 코로나19 관련 **사실확인**(팩트체크) 보도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가짜뉴스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 KBS 팩트체크K, MBC 팩트의 무게











평생친구

-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여 각 부처에서 소관 업무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심의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의 후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 할 예정이며,
  -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으로 사실확인(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전문사이트인 **'팩트체크넷\*'에서 실시한 사실확인** (팩트체크) **결과**는 언론사를 통해 기사 보도로 연결된다.
  - \* www.factchecker.or.kr
  - 이와 함께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정확한 방역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12.24.)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방역 당국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여러분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먼저 신뢰하여 주시기를 당부 하였다.











# 4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교정시설 방역 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직원 20명과 수용자 478명이 확진되었다.
  - 법무부 차관이 현장을 긴급 점검하였으며, 현장에 대책본부를 즉각 설치·운영 중에 있다.
  - 현재 15개 동을 코호트 격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준하여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긴급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 □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이후 추가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50개 교정시설의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12.22.~12.23.)을 진행하였다.
- 점검결과 외부인 출입 시 문진표 작성·상시 마스크 착용 미흡 등의 사례에 대해 현지시정 19건, 계도 5건, 개선지시 8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가 코로나19에 잇달아 감염되는 등 교정 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신입 수용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하여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 신입 수용자 인수 시 **1차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에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다.
- 무증상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으로 해당 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저수검사를 실시한다.
  - \* 서울구치소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 및 수용자 3,221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미결정 14명을 제외한 3,207명 전원이 음성확인
- □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추가 감염자를 신속히 추적·격리하는 한편, 교정시설에서 치료·격리 중인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인 소년원·외국인보호시설·치료감호소도 PCR 검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파티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 어제(12.24.) 1차 점검을 통해 해당 업소가 집합금지 업소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으며, 1차 점검 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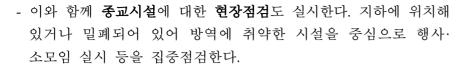












- 한편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61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하여 그간 **234** 명을 생활치료센터, 경기도의료원 등에 배치하고, 코로나19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 의료인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2월 23일부터 의사·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48명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 한편,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의 중간단계 개념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산소와 수액공급 등 의료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17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74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742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85명 감소하였다.











평생친구

○ 어제(12.2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하여, 이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 7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실적

- □ 12월 2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만4681개소, ▲실내체육시설 2,927개소 등 23개 분야 총 5만402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4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2개반, 1,35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지난 2주(12.10.~ 12.24.) 동안 8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이 중 72건에 대해 고발하였거나 진행 중이며, 85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외 673건은 계도 조치하였다.
- □ 연말 연시를 맞아 정부도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다.
-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각 부처에서 **61종 시설, 5,032 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 불임 >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 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현황
  - 6.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 7.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흥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1=1 = =1 = ±1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u>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u>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덕 50㎡ 이상)	▶ <u>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u>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u>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u>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b>좌석 두 칸 띄우기</b>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i>·</i> 대형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u>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u>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u>집합금지</u>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ul> <li>▶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li> <li>주관 파티 개최 금지</li> <li>▶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li> </ul>
기타	-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평 생 친 구

# 붙임2

#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다기적으로 강화
  - ① (고위험시설) <u>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u>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 ③ (관광·여행) <u>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u> 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 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 2. 방역 강화 방안

-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평생친구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 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붙임3

# 수도권 2.5단계 조치 시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m²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m'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ul> <li>▶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li>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결혼식장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b>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b>좌석 두 칸 띄우기</b>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ul>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li> <li>▶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키페	<ul>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평생친구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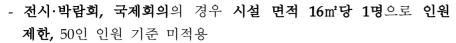












##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 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평생친구

# 붙임4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워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HL□ TLNU □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7664646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극 6:기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1 - 0 - 0 - 0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b>▶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평생친구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유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 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 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8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평 생 친 구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평생친구

# 붙임5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24.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광역(0개)	-	-	-	-	-	-	-
1.5단계	기초(8개)	-	-	<b>1개</b> (무주)	-	-	<b>7개</b> (태백시 등 7개 시군)	-
2단계	광역(12개)	-	<b>4개</b> (세종,대전,충 북, 충남)	<b>3개</b> (광주 전북 전남)	<b>2개</b> (대구,경북)	<b>2개</b> (울산 경남)	-	<b>1개</b> (제주)
	기초(10개)	-	-	-	-	-	<b>10개</b> (춘천시 등 10개 시군)	-
2.5단계	광역(4개)	<b>3개</b> (서울, 인천 경기)	-	-	-	<b>1개</b> (부산)	-	-
	기초(5개)	-	<b>1개</b> (당진)	<b>1개</b> (김제)	-	<b>1개</b> (거제시)	<b>1개</b> (동해시)	-

	지	역	단계조정내용			
구분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1		서울	12.8.~12.28.	서울 전지역	2.5(↑)	
2	수도권	경기	12.8.~12.28.	경기 전지역	2.5(↑)	
3		인천	12.8.~12.28.	인천 전지역	2.5(↑)	
4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1)	
5		대전	12.8.~12.28.	대전 전지역	2(↑)	
6	충청권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7		충남	12.15.~별도명령시	충남 일부지역	2(↑)	
'		ਠਰ	12.15.~12.28.	당진시	2.5(↑)	
8		광주	12.7.~12.28.	광주 전지역	2(1)	
	9 호남권	전북	12.8.~12.28.	전북 일부지역	2(↑)	
9			12.8.~별도명령시	무주군	1.5(-)	
			12.15~1.3	김제시	2.5(↑)	
10		전남	12.8.~12.28.	전남 전지역	2(1)	
11	경북권	대구	12.8.~12.28.	대구 전지역	2(1)	
12	성독년	경북	12.8.~12.28.	경북 전지역	2(↑)	
13		부산	12.15.~12.28.	부산 전지역	2.5(↑)	
14	경남권	울산	12.8.~12.28.	울산 전지역	2(↑)	
15	성타면	74 I L	12.8.~12.28.	경남 일부지역	2(↑)	
15		경남	12.21.~12.28.	거제시	2.5(↑)	
			12.20.~별도명령시	동해시	2.5(↑)	
16	강원	강원 강원	12.15.~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영월, 삼척 <sub>(12.20.~),</sub> 정선 철원, 강릉·평창 <sub>(12.18.~),</sub> 횡성·홍천 <sub>(12.23.~)</sub>	2(↑)	
			12.15.~별도명령시	태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 <sub>(12.21.~)</sub>	1.5(-)	
17	제주	제주	12.18.~1.3.	제주 전지역	2(↑)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2.5)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 붙임6

#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폐왜, 업무정지, 소독 처분 받은

# , **눈지**취하다.



\*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영업시간 외에 소독. 폐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사업장은 ① 일반지급절차와 ② 간이지급절차 중 1가지를 선택해 지자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지급절차 공적자료(세금신고)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고정비용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② 간이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등 확인만 받아 100,000원(정액) 지급합니다.





- · 예상 손실보상금 산정해보기
- 예상손실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소독기간이 짧고, 고정비용과 영업이익이 적은 경우 보상금은 낮게 산출 - 세금시고를 점계 해응 경우 실제 영업이익은 난게 나용
- 일반지급절차를 선택한 경우, 산정된 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 산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지급절차 비교

구 분	일반지급절차	간이지급절차
심사절차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매출액 증빙서류[10종] 제출 및 심사→ 심의→ 지급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지급
제출서류	<ul> <li>● 손실보상 청구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li> <li>● 배출쒝고정비 등 영업순실군기사류(6종)*</li> <li>*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기차세과세표준증명(소득급액증명 포함),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필고선전비, 보험료)</li> </ul>	<ul><li>● 손실보상 청구서</li><li>❷ 입금계좌 통장사본</li><li>❸ 사업자등록증</li></ul>
소요시간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독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0원~)	정액 100,000원

# 우리 시 군 구 연락처 :













평생친구

# 붙임7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아느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친구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잡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